

●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 호

건설신기술 지정

‘내한축진제 및 자극제를 사용하여 일 최저기온 -10℃까지 급열 양생 없이 타설 가능한 내한 콘크리트 시공 기술’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7월 5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신기술개발자

신청인(1)	법인명(성명)	(주)삼표산업		
	주 소	우03154 서울시 종로구 종로1로 42 아미빌딩 15층(수송동)		
	전화번호	02-476-5483	팩스번호	02-476-5485
신청인(2)	법인명(성명)	디엘이앤씨(주)		
	주 소	우03181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34 돈의문 디타워(평동)		
	전화번호	02-369-4181	팩스번호	02-2011-8097

2. 신기술의 개요

- 지정번호 : 제995호
- 명 칭 : 내한축진제 및 자극제를 사용하여 일 최저기온 -10℃까지 급열 양생 없이 타설 가능한 내한 콘크리트 시공 기술
- 기술분야 : 건축 > 철근콘크리트 > 콘크리트 제조 타설
- 신기술의 내용
이 신기술은 3종 조강포틀랜드 시멘트와 방동재(에틸렌글리콜 계열 복합체) 및 조강제(소듐 티오시네이트)를 주원료로 하는 무염화 내한축진제, 자극제(규산칼슘 분산액)를 사용하여 별도의 급열 양생 없이 비닐 보양만으로 콘크리트의 초기동해를 방지하고, 타설 초기(48시간내)에 5MPa의 압축강도를 확보할 수 있어 일 최저기온 -10℃까지 타설 가능한 내한 콘크리트 시공 기술이다.
- 신기술의 범위
설계기준 압축강도 24MPa 이상의 콘크리트를 대상으로 3종 조강포틀랜드 시멘트, 방동재(에틸렌글리콜 계열 복합체) 및 조강제(소듐 티오시네이트)를 주원료로 하는 무염화 내한축진제, 자극제(규산칼슘 분산액)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제조 및 타설하고 비닐 보양을 실시하여 최저기온 -10℃까지 시공 가능한 내한 콘크리트 시공 기술

3.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

- 가. 보호기간 : 고시일로부터 8년
- 나. 보호내용 :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
 -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
 -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,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
 -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

4. 신기술품셈

- 해당 없음

5. 기 타

-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(<http://www.kaia.re.kr>) 「지식/성과도서관/신기술·추천기술」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